

# 복지규정시행요강

제정 : 1992. 7. 7.	제32차개정 : 2004.11.23.
제1차개정 : 1993. 7.23.	제33차개정 : 2005. 2.23.
제2차개정 : 1994. 7. 7.	제34차개정 : 2005. 9.20.
제3차개정 : 1994.12.27.	제35차개정 : 2006. 1.17.
제4차개정 : 1995. 7.14.	제36차개정 : 2006. 6. 1.
제5차개정 : 1996. 7.28.	제37차개정 : 2006.12.15.
제6차개정 : 1996.11. 1.	제38차개정 : 2007. 2.27.
제7차개정 : 1997. 6. 1.	제39차개정 : 2007.11.16.
제8차개정 : 1997.12.31.	제40차개정 : 2008. 5.23.
제9차개정 : 1998. 2. 7.	제41차개정 : 2008.12.18.
제10차개정 : 1998. 5. 9.	제42차개정 : 2009. 8.10.
제11차개정 : 1999. 1. 1.	제43차개정 : 2009.11.18.
제12차개정 : 1999. 2.27.	제44차개정 : 2010. 7. 1.
제13차개정 : 1999. 7. 5.	제45차개정 : 2010.11. 1.
제14차개정 : 1999. 9. 2.	제46차개정 : 2011. 4.27.
제15차개정 : 2000. 3.15.	제47차개정 : 2011. 8.30.
제16차개정 : 2000.11.23.	제48차개정 : 2012. 7. 1.
제17차개정 : 2001. 4. 2.	제49차개정 : 2013. 1. 1.
제18차개정 : 2001.11. 1.	제50차개정 : 2014. 1. 1.
제19차개정 : 2001.12. 4.	제51차개정 : 2014. 3.24.
제20차개정 : 2002. 4. 1.	제52차개정 : 2014. 7.29.
제21차개정 : 2002. 6. 3.	제53차개정 : 2015.12.10.
제22차개정 : 2002.10. 1.	제54차개정 : 2016. 6.20.
제23차개정 : 2002.12. 9.	제55차개정 : 2017.11. 9.
제24차개정 : 2003. 4.14.	제56차개정 : 2019. 6.17.
제25차개정 : 2003. 6. 9.	제57차개정 : 2019.11.25.
제26차개정 : 2003. 9. 1.	제58차개정 : 2020. 7.14.
제27차개정 : 2004. 1. 1.	제59차개정 : 2021.12.24.
제28차개정 : 2004. 1.14.	제60차개정 : 2022.11. 8.
제29차개정 : 2004. 4.21.	제61차개정 : 2023.11.10.
제30차개정 : 2004. 7.22.	<u>제62차개정 : 2024. 6.17.</u>
제31차개정 : 2004.10. 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국내복지

### 제1절 보건 및 후생

제2조(의료비 지급) 삭제 <2011.4.27.>

제2조의2(건강검진) 규정 제4조에 의한 건강검진 지원금액 및 실시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복지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후생시설 운영기준) ① 규정 제10조에 의한 후생시설은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소비조합, 보육시설 및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4조(후생비 지급) ① 본지사에 단신 부임한 직원에 대하여는 가족 거주지간의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및 창립기념일 등 행사일에 기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부양가족) 삭제<2010.7.1>

제6조(경조금 지급) 삭제<2011.4.27>

제6조의 2(보육비 지급) 삭제<2012.7.1>

제7조(장학금 지급) 삭제<2021.12.24>

제8조(가계안정비 지원) 삭제<2008.12.18.>

제9조(통근보조금) 삭제<2010.7.1>

제10조(선택적 복지) ① 규정 제18조에 의한 선택적 복지의 대상 및 운용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국내 근무중인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직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운용방식 : 개인별 가용 예산 범위 내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집행
3. 예산배정 : 매년 직원별로 배정하되 타 복지제도 수혜자에 대한 예산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운영하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③ 선택적 복지항목, 예산배정 기준, 지원대상 증빙내용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담당본부장이 정한다.

## 제2절 주택대여

제11조(임차주택 대여기준) 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차주택 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담당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의 2 (지사 근무 등에 대한 주택 대여) 삭제<2022.11.8>

제12조(주택임차한도) 삭제<2022.11.8>

제13조(임차보증금) 삭제<2022.11.8>

제13조의 2 (주택대여에 따른 사용료) 삭제<2022.11.8>

제14조(임차주택의 대여·관리) 삭제<2022.11.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주택대여) 삭제<2022.11.8>

## 제3절 합숙소 운영

제16조(건물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합숙소 건물은 본사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내지사의 경우 복지담당팀장(그 밖의 국내지사는 지사장,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관리한다.

제17조(경비부담) ① 공사는 합숙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경비부담의 한도는 복지담당팀장이 정한다.

제18조(입소·퇴소명령) 입소, 퇴소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명령은 복지담당팀장이 한다.

제19조(운영) 합숙소는 입소직원으로 조직된 합숙소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합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복지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피복대여

제20조(대여기준) 피복대여는 피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절 재해보상

제21조(평균임금 산정) 삭제<2015.12.10>

제22조(재해부조금) ①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재해부조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재해부조금은 통상임금의 200% 범위내에서 복지담당팀장이 정한다.

제23조(보상 및 부조금 신청)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재해보상금 또는 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재해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복지담당팀장에게 신청한다.

#### 제6절 연차 휴가보상 삭제<2010.7.1>

제24조(지급기준) 삭제<2010.7.1>

제25조(지급시기 및 지급대상기간) 삭제<2010.7.1.>

## 제3장 국외복지

### 제1절 보건

제26조(의료비 지급) ① 규정 제22조에 의한 의료비 지급은 직원 및 직원이 근무지에서 부양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의료비 지급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미화 5만달러를 한도로 요양실비에서 미화 30달러를 공제한 금액의 9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에서 해당사고의 치료를 위한 실의료비를 전액지원 할 수 있다.

④ 규정 제22조제2호에 의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및 질병과 직접 관계가 없는 신체이상에 대한 치료 및 투약
2. 경미한 신경쇠약에 대한 치료
3. 부상 및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성형일체
4. 치아보철 및 치열교정
5.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건강진단 및 검사
6. 그 밖에 의료비 지급이 부적당한 치료

제26조의 2(건강검진) 규정 제4조에 의한 건강검진 지원금액 및 실시시기 등 세부사항은 복지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 제2절 후생

제27조(중식대 지급) 삭제 <2012. 7. 1>

제27조의 2(보육비 지급) 삭제 <2012. 7. 1>

제28조(장학금 지급) ① 규정 제23조에 의한 장학금은 직원의 근무지 및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장이 인정한 인근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범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녀 1인당 연간 장학금 지급 총액은 연환산 미화 3만5,000달러(유로화 30,500 유로)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유치원의 경우 장학금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장학금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이내,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로 지급 하며, 해당 한도 초과시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 장학금에 포함되는 운영지원비는 자녀 1인당 연간 3,000달러(월평균 미화 250달러)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전수업료 등 학교 정규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 P.T.A.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보험료 등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전수업료, ESL(영어특별(강화)교육) 등 정규과목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장학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취학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장학금은 분기별 또는 학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지사장에게 신청하며 지사장은 사정 및 지급한다.

1.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사본

2. 학비를 일부 면제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⑥ 납입고지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사장은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입영수증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제29조(사회보장보험가입등) ① 규정 제24조제1호의 보험가입은 별표 4에서 정한 범위내의 실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 납입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8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회보장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담당 본부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지사장은 관계 자료를 붙여 복지담당팀장 및 국외지사통할팀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주택대여) ① 규정 제25조에 의한 주택임차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임차한도를 초과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복지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한다.

1. 지사장의 주택임차. 다만, 초과금액은 주택임차한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임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말미암은 재계약.
3. 현지 통화가치 등의 변화. 다만, 초과금액은 주택임차한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주택임차한도 내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서 사본을 자산관리담당팀장 및 국외지사통할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현지의 관례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의 주택임차한도 내에서 집기, 비품 등을 따로 임차할 수 있다.

⑤ 해약 또는 퇴거시의 소각금은 임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임대료 2개월분 해당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복지담당 본부장이 승인한 때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휴가보상금) 삭제<2010.7.1>

제32조(가계안정비) 삭제<2008.12.18>

## 제4장 보칙

제33조(계산단위) 제26조의 의료비 및 제28조의 장학금의 계산에 있어 해당 통화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34조(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복지) 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복지에 대하여는 채용대상 직원의 능력, 경력 및 현지의 법령,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5조(적용환율) 미국 달러화와 현지 통화의 환산율은 지급일에 근무지의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미국 달러화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제36조(지급시기) 제26조의 의료비 및 제28조의 장학금은 발생일(비용지출일)이 속한 연도 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지급 대상분에 한정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칙(제정)

이 요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

이 규정은 199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 및 제4조의 2에 따른 의료비지급 및 직장단체정기보험가입은 199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

-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호의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9월 30일까지는 1일당 2,000원을 지급한다.
- ③(경과조치) 국외보수복지규정시행요강의 내용이 이 요강과 다른 때에는 이 요강에 따른다.

#### 부칙(3)

이 요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4)

이 요강은 199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5)

이 요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6의 모스크바는 199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6)

이 요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1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7)

이 요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8)

이 요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9)

①이 요강은 199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요강 제9조 제1항의 대여기준 중 "2년이상 근무한 무주택직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6월이상 근무한 무주택직원"의 기준이 적용된다.

#### 부칙(10)

이 요강은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1)

이 요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2)

이 요강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국내지사 장에게 대여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3)

이 요강은 199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여한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4)

이 요강은 199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요강은 200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요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요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요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제7조(개인연금지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이 요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1)

이 요강은 2002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

이 요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3)

①이 요강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가계안정비 지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칙 제18조의 3항은 폐지한다. ③제10조의 주택임차한도는 기존의 주택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4)

이 요강은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5)

이 요강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6)

이 요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7)

이 요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8)

이 요강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9)

이 요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0)

이 요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1)

이 요강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2)

이 요강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3)

이 요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4)

이 요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5)

이 요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6)

이 요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7)

이 요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1조 제①항의 대여기준중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직원”은 2006년 12월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38)

이 요강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9)

이 요강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의 가계안정비 지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0)

이 요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1)

이 요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2)

이 요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3)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조 제3호, 제13조의 2의 개정사항은 2011.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3조의 2의 사용료 기간은 2011.1.1 이후부터 기산한다.

2.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의 2는 2001.11.1자 이후 주택대여기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44)

이 요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5)

이 요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6)

이 요강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7)

이 요강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8)

이 요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9)

이 요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2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0)

이 요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2 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사항은 신규 주택임차 및 재계약시부터 적용한다.

부칙(51)

이 요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2)

이 요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3)

이 요강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한도감액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54)

이 요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및 별표6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계약건 (동일 주택의 기간연장 제외)부터 적용한다.

부칙(55)

이 요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6)

이 요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7)

이 요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8)

이 요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9)

① (시행일)이 요강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내규의 폐지) 이 요강의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칙(60)

이 요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

(시행일) 이 요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2)

(시행일) 이 요강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해부조금지급표

구분	지급액
주택건물 <sup>주1)</sup> 이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기준금액 <sup>주2)</sup> 의 10분의 39
주택건물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기준금액의 10분의 26
주택건물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기준금액의 10분의 13

주1) 재해부조금 지원대상 주택건물은 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하거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건물로 한정한다.

주2) 기준금액은 전년도 전체직원의 평균 통상임금 월액

[별표 2] 국외사무소 등록금지급한도액 삭제 <2014.7.29.>

[별표 3]

국외지사 주택임차한도액

지역	구분	단위	월임차료	
			2급이상	3급이하
미 국(L A)		US\$	<u>4,450</u>	<u>4,300</u>
미 국(뉴욕)		US\$	<u>5,400</u>	<u>5,150</u>
중 국		CNY	33,000	30,000
브라질		BRL	11,400	10,700
프랑스·독일		EUR	3,600	3,400
인도네시아		US\$	3,660	3,470
러시아		US\$	<u>5,500</u>	<u>5,300</u>
아랍에미레이트		US\$	4,750	4,500
멕시코		US\$	3,500	3,300

일 본	JPY	477,360	448,860
영 국	US\$	4,450	4,025
베트남	US\$	4,400	3,900
칠 레	US\$	2,700	2,500
인 도	INR	264,000	231,000
파나마	US\$	3,400	3,000
필리핀 · 남아프리카공화국	US\$	3,600	3,400
카자흐스탄	US\$	3,600	3,200
이 란	US\$	3,600	3,400
사우디아라비아	SAR	21,000	20,000
싱가포르	SGD	7,000	6,000
폴란드	US\$	3,250	3,050
스페인	EUR	2,700	2,520
튀르키예	US\$	3,400	3,200

※ 귀임, 부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2인 이하는 월 임차상한선의 150% 범위 이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용자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 수가 1인 증가할 때마다 이에 10%p씩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지사 의료보험 가입한도액

구 분	월간금액
미국 및 기타	US\$500
프랑스 · 독일	EUR460

[별표 5] 가족수당표 삭제<2010.7.1.>

[별표 6] 주택임차한도 삭제<2022.11.8>

[별표 7] 주택대여에 대한 사용료 삭제<2022.11.8>